처무규정

시행일: 2024.01.0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조직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부서 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본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단위부서"라 함은 본 규정에 규정된 각 대학(원) 및 부속(기타)기관, 부설연구소(원)을 말한다.
- 2. "본부부서"라 함은 전 호의 단위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말한다.
- 3. "공동기구"라 함은 양 캠퍼스를 관장하는 본부부서 및 단위부서를 말한다.
- 4. "일반기구"라 함은 공동기구, 부속(기타)기관을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본교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복수부서 관련 업무)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부서 고유 기능에 부합하거나, 업무 관련성이 더 큰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처의 업무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.

② 학무부총장(서울), 학무부총장(국제)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, 업무조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제2장 직제 및 기구

제5조(총장)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학무와 행정을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조(부총장)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무부총장(서울), 학무부총장(국제), 의무부총장, 행·재정부총장, 대외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총장의 관할업무 영역은 [별표 1]과 같다.

- ② 총장 유고 시에는 제1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각 부총장은 현안업무 협의를 위하여 유관 부총장 및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유관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부서장 등) ① 각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를 대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본 규정에 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부서 내의 과 또는 팀별 분장업무를 조정·변경할 수 있다.

- ② 각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영역은 [별표 1]에 따라 구분한다.
- ③ 각 부서의 부처(원)장은 부서장을 보좌하며 부서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각 부서의 실(팀)장은 부서장과 부처(원)장을 보좌하며 실무에 관한 책임을 진다.
- ⑤ 각 부서의 팀원은 실(팀)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8조(공동기구) ① 대학교에는 양 캠퍼스를 관장하는 본부부서로서, 다음 각 호의 공동기구를 둔다.

- 1. 총장실
- 2. 기획조정처 : 전략기획팀, 학술진흥팀, 예산팀, 감사팀
- 3. 연구처 : 연구진흥팀, 연구윤리센터
- 4. 재무처 : 재무회계팀
- 5. 국제처 : 국제교류팀, 글로벌입학팀, 글로벌교육지원팀(서울/국제)
- 6. 정보처 : 정보기획팀, 학사정보팀, 경영정보팀
- 7. 입학처 : 입학전형팀, 입학정보팀
- 8. 인사처 : 인사팀
- 9. 커뮤니케이션센터 : 커뮤니케이션팀, 출판·디자인팀
- 10. 미래혁신원
 - 가. 미래혁신단: 학생지원센터(서울/국제), 심리상담센터(서울/국제),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/국제),

미래인재센터(서울/국제), 현장실습지원센터(서울/국제)

나. 창업지원단: 창업교육센터(서울/국제), 창업보육센터(서울/국제)

- 11. 재정운영본부 : 재정운영팀 12. 대학행정연구원 : 교육행정팀
- ② 대학교에는 양 캠퍼스를 관장하는 단위부서로서 경희의과학연구원, 중앙도서관, 미래문명원, 경희기록
- 관, 산학협력단, 인권센터, 교수학습개발원을 둔다.
- ③ 공동기구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획조정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팀(실)을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팀(실)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9조(서울캠퍼스의 기구) ① 서울캠퍼스에 설치하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기구
 - 가. 부총장실
 - 나. 교무처 : 교무팀, 학사지원팀, 교직팀
 - 다. 총무관리처 : 총무팀, 관리팀, 관재팀, 안전팀, 시설운영팀
 - 라. 대외협력처 : 대외협력팀
 - 마. 대학원 : 혁신기획팀(공동), 교육지원팀
 - 바. 전문 및 특수대학원 : 행정실
 - 사. 각 대학 : 행정실
- 2. 부속기관
 - 가. 국제교육원
 - 나. 신문방송국
 - 다. 글로벌미래교육원
 - 라. 중앙박물관
 - 마. 자연사박물관
 - 바. 출판문화원
 - 사. 건강센터
 - 아. 생활관
 - 자. 예비군연대본부
 - 차. 부설연구소(원)
 - 카. 학교기업
 - 타.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

파. 한국어센터

- 3. 기타기관 : 학생군사교육단
- ② 제9조 제1항의 부서는 기획조정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팀(실)을 둘 수 있으며, 팀(실)장은 5 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0조(국제캠퍼스의 기구) ① 국제캠퍼스에 설치하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기구
 - 가. 부총장실
 - 나. 교무처 : 교무팀, 학사지원팀, 교직팀
 - 다. 총무관리처 : 총무팀, 관리팀, 관재팀, 안전팀
 - 라. 대외협력처 : 대외협력팀
 - 마. 대학원 : 혁신기획팀(공동), 교육지원팀
 - 바. 전문 및 특수대학원 : 행정실
 - 사. 각 대학 : 행정실
- 2. 부속기관
 - 가. 신문방송국
 - 나. 평생교육원
 - 다. 언어교육원
 - 라. 건강센터
 - 마. 생활관
 - 바. 체육부
 - 사. 공학교육혁신센터
 - 아. 천문대
 - 자. 예비군연대본부
 - 차. 혜정박물관
 - 카. 부설연구소(원)
 - 타. 학교기업(한방재료가공)
 - 파. 원자로센터
 - 하. 체육시설운영단
- 3. 기타기관 : 학생군사교육단
- ②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서는 기획조정처장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팀(실)을 둘 수 있으며, 팀(실)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(별도 및 하부조직) ① 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하부조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직종 및 직급

제12조(직종 및 직급) 본교에 종사하는 교원, 직원 및 조교(이하 '교직원' 이라 한다)의 직종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: 교수, 부교수, 조교수

2. 직원

가. 사무직 : 2급, 3급, 4급, 5급, 6급, 7급, 8급, 9급

나. 연구직 : 3급, 4급, 5급, 6급, 7급, 8급

다. 기능직 : 5등급, 6등급, 7등급, 8등급, 9등급, 10등급

3. 조교 : 「조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장 업무 분장

제13조(총장실) 총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총장 비서 업무
- 2. 총장 결재문서 등 기록 관리
- 3. 각종 대내외 의전 수행
- 4. 총장 대내외 활동 보좌
- 5. 법인이사회 관련 업무 지원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4조(부총장실) 각 부총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부총장 업무 보좌
- 2. 의전 및 수행, 비서 업무
- 3. 지시사항 관리
- 4. 기록 관리
- 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5조(기획조정처) 기획조정처에 전략기획팀, 학술진흥팀, 예산팀과 감사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전략기획팀
 - 가. 정책 및 제도 관련 (부)총장 결재문서 심의
 - 나. 발전전략 및 발전계획 수립 총괄 지원
 - 다. 대학 행정 거버넌스 조사 및 개편
 - 라. 대학 행정 발전(전문/책임행정 체계) 제고
 - 마. 각종 대외 재정사업 및 대외기관 대응 업무 지원
 - 바. 대학평의원회 관련 지원
 - 사. 기관 및 부서 간 업무 조정
 - 아. 거시적 모집단위 개편 및 정원 관리
 - 자. 정책 및 기획과제 관리
 - 차. 주요 회의체 기획 및 관리
 - 카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2. 학술진흥팀
 - 가. 대학/학술기관, 문화, 프로그램 등 학술진흥 관련 조사, 분석
 - 나. 대학 위상 전략 수립 및 업무 지원
 - 다. 대학자체평가(O&P Review) 기획 및 운영
 - 라. 대내 성과지표 관리, 통계관리(정보공시, 고등교육통계)

- 마. 각종 대외 재정사업 및 단위부서 대외평가 (인증) 지원
- 바. 대학위상 관련 (부)총장 결재문서 심의
- 사. 구성원 만족도 관련 정책 기획
- 아.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시스템 관리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예산팀

- 가. 대학 재정전략 수립
- 나. 재정 관련 (부)총장 결재문서 심의
- 다. 재정 예산 관련 규정 제·개정 및 지침 관리
- 라. 중장기 소요예산 확보 계획 마련 및 이행
- 마. 대학예산 편성·조정·심의·통제
- 바. 재정·원가 분석 및 평가
- 사. 차입금 조달 및 관리
- 아. 등록금 책정 및 심의
- 자. 인건비(급여, 수당 등)·수수료 책정 및 심의
- 차.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
- 카. 대학 재정 투자 심사 분석
- 타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4. 감사팀

- 가. 교내 법무 업무 지원 및 법률자문
- 나. 소송업무 수행
- 다. 제규정의 제정, 개·폐 심의 및 유권해석
- 라.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제반 감사
- 마. 재정·회계·경영 관련 업무 감사 및 업무 지도
- 바. 행정 전 분야 사전예방적 감사 및 업무지도
- 사. 제도개선 지원 및 사업 전반의 타당성, 효율성, 가치적합성 점검 등 정책감사
- 아. 대학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책 수립
- 자. 민원·고충 조사, 상담 및 처리
- 차.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 접수·상담·조사·조정·중재·통보
- 카.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
- 타. 교내 민원 처리 관련 각종 업무 지도 및 감독
- 파.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
- 하.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및 자문
- 거.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의 처리 및 내용의 조사
- 너. 청탁방지담당관 업무 지원
- 더. 교직원 서약서 징구
- 러.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수행
- 머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16조(대학행정연구원) 대학행정원구원에 교육행정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교육 및 연수과정 운영, 평가 및 관리
- 2. 교육 및 연수과정 운영 결과 보고

- 3. E-Learning 프로그램 운영
- 4. 대학행정연구원 예산, 행정, 서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운영위원회 운영 및 행정 지원
- 6. 교육 및 연수과정 관련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
- 7. 교육 및 연수과정의 연구, 프로그램개발
- 8. E-Learning 프로그램 개발
- 9. 학내외 교육 및 연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
- 10. 국내외 대학 교육/정책/산업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
- 11. 온/오프 교육과정(프로그램) 개발 및 효과성 분석/보고
- 12. 교육과정개발협의회 운영 및 행정 지원
- 1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17조(교무처) 교무처에 교무팀, 학사지원팀, 교직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단과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대학에서 직접 관장토록 할 수 있다.

1. 교무팀

- 가. 교원인사(임용, 정원, 급여 등 포함)
- 나. 교원인사기록의 보존 및 관리
- 다. 우수교원 확보방안 수립
- 라. 비전임교원 인사관리
- 마. 조교 정원 책정 및 관리(총괄 정리)
- 바. 대학장 수여
- 사. 학칙개정
- 아. 교원인사위원회 운영
- 자. 교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
- 차. 교원 출장 및 해외여행 관리
- 카. 각종 교원 관련 통계 업무
- 타. 전체교수회의 및 교수연찬회 운영
- 파. 교원 상벌
- 하. 교수의회와의 협의체 운영
- 거. 교원 연구년제 관련 업무
- 너. 요람 발간
- 더. 교원의 업적 평가
- 러. 교원의 대내기관 겸직 관리, 대외기관 위원추천, 상훈추천 등
- 머.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
- 버. 학부 편제개편 및 정원조정 업무
- 서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학사지원팀

- 가. 학적부 보고 및 관리
- 나. 학적 변동 업무(등록, 제적, 복학, 휴학, 재입학, 전과 및 퇴학 관련 업무총괄)
- 다. 학점 및 성적관리
- 라. 졸업업무(졸업사정 지원 및 학위증 발급)
- 마. 등록, 성적 및 학사 등 안내문 발송

- 바. 학사 관련 상담 업무
- 사. 학생 전공이수 관련 업무(단일전공, 다전공, 부전공, 조기졸업)
- 아. 학적·수업 관계 통계 작성
- 자. 편입생 학점 인정 업무
- 차. 성적 및 학적부 기재사항 관리
- 카. 학부 학위수여식(명예졸업증 수여 포함) 지원
- 타.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
- 파. 강좌 개설 또는 폐강 관리
- 하. 수강신청 관련 업무
- 거. 중간 및 기말시험 일정 수립
- 너. 교·강사 출결강 관리
- 더. 교·강사 강의 및 급여시수 관리
- 러. 종합강의 시간표 편성 및 운영
- 머. 학사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
- 버. 학부 강의평가 실시 및 보고
- 서.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
- 어. 졸업능력인증제도 운영관리
- 저. 학점교류 업무(가상대학 강좌관리 포함)
- 처. 교무처장 직인 관리
- 커. 학력조회 업무 지원
- 터. 계절제수업 운영 총괄(서울)
- 퍼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교직팀

- 가. 교직 관련 제반 업무 총괄
- 나.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
- 다. 교원양성위원회 운영
- 라. 교직 정원 및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관리
- 마.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자격 검정 및 최종 확정
- 바. 교직 교육과정 운영 관리
- 사. 교원양성과정 일반 행정
- 아. 계절제수업 운영 총괄(국제)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18조(연구처) 연구처에 연구진흥팀, 연구윤리센터를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연구진흥팀

- 가.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(해외연구파견 및 해외학술활동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)
- 나. 교비 연구비 공모, 진행, 관리
- 다. 교비 대응연구비 지원 및 관리
- 라. 교비 연구박사 및 연구교수 지원
- 마. 교원 연구실적 평가 및 관리
- 바. 부설연구소(원) 평가 및 관리
- 사. 학술연구운영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

- 아. 각종 연구 관련 통계 작성
- 자. 연구 관련 정보 제공
- 차. 교내 연구지원을 위한 기획 및 제도 개발
- 카. 대내 연구재원 확대 방안 수립
- 타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연구윤리센터

- 가. 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항
 - 1)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
 - 2) 생명윤리심의위원회
 - 3) 동물실험윤리위원회
 - 4) 생물안전위원회
- 나.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
- 다. 구성원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- 라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19조(입학처) 입학처에는 입학전형팀과 입학정보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단과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입학전형팀

- 가. 학부 신·편입학, 일반대학원 내국인 입학전형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, 수행
- 나. 학부 신·편입학, 일반대학원 내국인 학생선발 및 입학 사정, 관리
- 다. 입시전형 모집요강,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, 관리
- 라. 입시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
- 마. 입학전형 결과 분석 및 입시 통계 관리
- 바. 입학원서, 전형자료 등 관리, 보존
- 사. 학력 조회 의뢰(편입학)
- 아. 우수학생 유치 방안 기획, 수행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입학정보팀

- 가. 입학전산시스템 계획 수립, 운용 및 관리
- 나. 입학전산시스템 기초코드 및 전형자료 생성, 성적 및 사정 처리
- 다. 합격자 사정 관련 전산검증위원회 운영
- 라. 입학전산시스템 자료 관리, 보존
- 마. 합격자발표시스템 검증 및 관리
- 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0조(인사처) 인사처에 인사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직원 인사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
- 2. 직원 정원조정 및 임용계획 수립
- 3.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
- 4. 직원 상벌
- 5. 직원인사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
- 6. 직원 각종 복지제도 기획

- 7. 노동조합과의 협의체 운영(단체협약 등 노무관리)
- 8. 직원의 인사, 복무 관리
- 9.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
- 10. 직원 인사기록 보존 관리
- 11. 직원 교육훈련 실시 및 과정 운영
- 12. 사학연금, 건강보험, 교원공제회, 국민연금, 고용보험 관련 업무
- 13. 직원 각종 복지제도 운영
- 14. 인사관련 통계지표 관리
- 15. 노동조합과의 협의체 운영(단체협약 등 노무관리)
- 1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1조(총무관리처) 총무관리처에 총무팀, 관리팀, 관재팀, 안전팀, 시설운영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단과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총무팀

- 가. 대외문서의 발송, 접수, 분류, 보존, 문서 이관 및 관리
- 나. 기밀문서 관리
- 다. 총장 직인 관리
- 라. 각종 양식 관리
- 마. 보안사항에 관한 통제
- 바. 우편물 수발
- 사. 자동차 등 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에 관한 업무
- 아. 각종계약 및 자산매매(부동산, 차량 등) 업무
- 자. 납품실적증명 등 제증명 발급
- 차. 제반 행사 지원
- 카. 의전사항
- 타. 물품구매 및 예정가격 작성
- 파. 차관에 의한 교육·연구 기자재 구입
- 하. 관세감면추천 및 용도확인
- 거. 차량 운영 및 관리
- 너. 각종 시설물 임대차
- 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관리팀

- 가. 시설물 보수사업 등의 계획수립
- 나. 건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물 관리비를 이용한 소규모 개보수(네트워크 공사 제외)
- 다. 안전관리자 선임(보일러, 가스, 전기, 승강기, 냉동, 환경 등) 및 정기검사 수검업무
- 라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, 유지보수 및 주관부서의 장애학생편의시설 계획 수립 협조
- 마. 교내 조경 및 수목 관리
- 바. 공간관리위원회 운영, 공간관리소위원회 내용 취합·보고 및 그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
- 사. 건물의 설계도서, 지하매설물도 등 각종 도면관리
- 아. 공간조정에 따른 도면 수정
- 자.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관리
- 차. 실험폐수 및 유해폐기물 처리

- 카. 소방계획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, 소방교육 및 훈련
- 타. 교내 소방시설물 유지보수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
- 파. 전기, 상하수도, 가스, 통신 등 시 설물 관리 관련 공공요금 업무
- 하. 온실가스 회에너지 목표관리 운영
- 거. 각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
- 너. 각종 행사시설물 설치관리
- 더. 대학 건설 사업종합개발계획 수립
- 러. 대학 신·증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검토
- 머. 대학 신·증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추정사업비 검토
- 버. 대학 신·증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관리
- 서. 대학 신·증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관련 용역 관리 및 감독
- 어. 대학 신·증축 및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 공사 관리 및 감독
- 저. 대학의 건물, 환경 및 공간 등의 디자인 관리 및 기획
- 처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관재팀

- 가. 비품 및 준비품 보관, 유지 및 관리
- 나. 비품의 불용 결정
- 다. 불용품 처리(해체·폐기·매각)
- 라. 정기 및 특별 재물조사
- 마. 비품 수급계획 수립
- 바. 비품 수리 및 형질변경
- 사. 비품 손·망실 보고
- 아. 비품이동 및 교내·외 반출·입에 관한 사항
- 자. 창고관리(물품 입고, 보관, 출고)
- 차. 전산기기 유지, 보수
- 카. 실험·실습기자재 현황파악 및 보고
- 타. 대학 실험·실습설비 기준 관리
- 파. 교육용기계기구도입위원회 운영관리
- 하. 물품 구입, 공사 등에 관한 검수
- 거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4. 안전팀

- 가. 안전관리 총괄
- 나. 안전상 유해·위험요인 점검, 개선 및 방지 대책 수립
- 다. 안전사고 대응
- 라. 안전 관련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
- 마.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, 건강검진, 보험처리
- 바. 실험실 안전진단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
- 사. 연구실 안전관리자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 수검업무
- 아. 재해예방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5. 시설운영팀

가. 대관시설 연간 활용계획 수립 및 대관업무 총괄

- 나. 대관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
- 다. 교내 행사 관련 음향기기 설치·조작 지원
- 라. 교내 공연장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
- 마. 크라운관, 국제회의장 음향·조명시설 관리
- 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2조(재무처) 재무처에 재무회계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회계, 재무 업무
- 2. 단기적 자금 관리 및 운영
- 3. 중장기 자금 투자계획 실행
- 4. 현금출납
- 5. 수입, 지출의 집행 및 결산
- 6. 부가가치세, 소득세 등 재무 관련 세금에 관한 업무
- 7. 유가증권 관리
- 8. 각종 기금 관리 및 운영
- 9. 각종 재무에 관한 통계·보고
- 10. 각종 수입·지출에 관한 통계·보고
- 1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3조(재정운영본부) 재정운영본부에 재정운영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재정운영팀
 - 가. 재정 정책과제 기획 및 관리
 - 나. 재정 성과지표 관리
 - 다. 대외기관 업무 제휴 및 투자 유치 추진
 - 라. 소관 재정운영기금 관리 및 운영
 - 마. 소관 위원회 운영
 - 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4조(정보처) 정보처에 정보기획팀, 학사정보팀과 경영정보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정보기획팀
 - 가.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, 집행, 평가
 - 나. 교내 정보화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정책 개발
 - 다. 정보화 관련 예산 및 인력 관리
 - 라. 정보화사업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
 - 마.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등 정보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장비의 도입과 관리
 - 바. 정보시스템 기반 소프트웨어(DB, WAS 등) 도입과 관리
 - 사.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
 - 아. 정보통신기기 데이터 백업 관리
 - 자. 포털(SSO), 그룹웨어, 웹메일 등 정보시스템 운영
 - 차. 스마트캠퍼스 구축 및 운영
 - 카. 교내 정보시스템 도입 기술검토 및 지원

- 타. 공용 소프트웨어의 관리
- 파. (서울)공용전산교육실 관리
- 하. 정보화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
- 거. 정보서비스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 관리
- 너. 정보처 공통행정업무
- 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학사정보팀

- 가. 학부/대학원 학사업무 정보화 기획 및 신규서비스 개발
- 나. 학부 학사행정 관리시스템 운영(학적, 등록, 장학, 수업, 성적, 상담, 교류, 졸업, 취업 등)
- 다. 대학원 학사행정 관리시스템 운영(학적, 등록, 장학, 수업, 성적, 상담, 교류, 졸업, 취업 등)
- 라. 고등교육통계, 정보공시 등에 관련된 사항
- 마. 공학교육인증시스템 운영
- 바.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
- 사. 기숙교육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운영
- 아. 대학원 입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
- 자. 교내 타 시스템과의 학사 정보 연동
- 차. 학사업무의 정보유통 최적화를 위한 업무 절차 조정 및 중재
- 카. 교내 학사 관련 업무시스템 도입 기술검토 및 지원
- 타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경영정보팀

- 가. 일반행정, 연구, 학부입시 업무 정보화 기획 및 신규서비스 개발
- 나. 일반행정 관리시스템 운영(인사, 급여, 예산, 회계, 구매, 자산, 기부금, 병무 등)
- 다. 연구행정 관리시스템 운영(연구, 업적, 산학행정 등)
- 라. 학부 입시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
- 마. 교내 타 시스템과의 행정, 연구, 학부입시 정보 연동
- 바. 종합정보시스템 공통업무 및 공통모듈 관리
- 사. 데이타베이스 운영 및 정보시스템 개발 기술 관리
- 아. 통합로그인 제공
- 자. 행정, 연구, 학부입시 업무의 정보유통 최적화를 위한 업무 절차 조정 및 중재
- 차. 교내 행정, 연구, 학부입시 업무시스템 도입 기술검토 및 지원
- 카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5조(국제처) 국제처에 국제교류팀, 글로벌입학팀, 글로벌교육지원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단과대학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대학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국제교류팀

- 가. 국제화 관련 장·단기 발전계획, 정책 수립 및 심의, 조정
- 나. 국제화 관련 위원회 운영
- 다. 해외대학, 기관과의 교류 협정 체결
- 라. 해외대학, 기관과의 학생 관련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마. 해외대학, 기관과의 교직원 교류 지원
- 바. 해외대학, 기관 관계자 방문 관리 및 지원
- 사.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해외교류 사업 지원

- 아. 구성원 대상 국제화 역량 제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자. 해외정부초청장학생, 국비유학생 선발 관련 업무
- 차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글로벌입학팀

- 가. 외국인 학부/일반대학원 입시
 - 1) 입학전형 계획 수립
 - 2) 신·편입학 등의 학생선발
 - 3) 입학요강 및 입시관련 각종 서식 개발 및 제작
 - 4) 입학원서 관리, 보존, 폐기
 - 5) 입시장학 지급 방안 수립
 - 6) 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
 - 7) 입시예산 편성 및 관리
 - 8) 입시 관련 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
 - 9) 입시전형 결과 분석
 - 10)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전형 개발
 - 11) 입시 관련 각종 통계 작성
- 나. 한국정부초청장학생 등 정부지원 학위과정 외국인 선발
- 다. 외국인 유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 유치를 위한 홍보 기획
- 라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글로벌교육지원팀

- 가. 외국인 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의 대학 생활 정착 및 사회진출 지원
- 나. 외국인 교원 및 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 출입국 업무, 체류 관리
- 다.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운영 부서 체류 관리 업무 지원 및 조정
- 라.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관련 대내·외 평가 및 인증제 수행
- 마. 외국인 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 평가 및 통계 관리
- 바. 외국인 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 커뮤니티 결성 지원
- 사. 외국인 학생(학부/일반대학원) 숙소 신청 및 선발 지원
- 아. 한국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및 해외정부 파견 외국인 장학생 지원
- 자. 외국인 신(편)입생 오리엔테이션 주관
- 차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6조(대외협력처)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 및 집행
- 2. 발전기금 기부자 발굴 및 예우
- 3. 기금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행사 기획·집행
- 4.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운영
- 5. 수증물품의 보고
- 6. 대 동문회 협력 및 지원
- 7. 동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·관리(외국인 동문 포함)
- 8. 동문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
- 9. 국내 자매기관과의 각종 교류협력사업 기획·집행
- 10. 발전기금 연계 프로그램 기획·집행

1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27조(커뮤니케이션센터)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커뮤니케이션팀, 출판·디자인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커뮤니케이션팀
 - 가.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
 - 나. 언론 관련 위기대응 업무
 - 다. 각종 대학평가 관련 평판도 관리 및 지원
 - 라. 공보 간행물 기획 및 제작
 - 마. 공보 문건(국·영문) 작성 및 교정·교열
 - 바. 전략적 광고 기획 및 제작, 운영
 - 사. 거교적 행사 자문 및 지원
 - 아. 본교 메인 홈페이지(국·영문) 개발·운영 및 콘텐츠 기획·제작
 - 자.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홈페이지 제작 지원 및 심의
 - 차. 본교 통합 이메일 뉴스레터 제작·배포
 - 카. 대학 커뮤니티 개발 및 운영
 - 타. 커뮤니케이션 21(주요 회의록 홈페이지) 운영
 - 파. 본교 공식 소셜미디어 포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
 - 하. 거교적 행사 사진·동영상 기획·제작
 - 거. 사진·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·관리
 - 너.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지원
 - 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출판·디자인팀

- 가. 본교 디자인 업무 총괄
- 나. 도서 출판 기획 및 판매
- 다. 경희학원 인쇄물 기획 및 제작
- 라. 경희학원 출판·디자인, 사진·영상, 홈페이지 관련 재정 사업
- 마. 경희학원 산하기관 디자인 감수 및 자문
- 바. UI(University Identity) 개발·관리
- 사. 기념품·스테이셔너리·상패류 등 기획·제작
- 아. 출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지원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28조(미래혁신원) ① 미래혁신원에 미래혁신단, 창업지원단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미래혁신단

가. 학생지원센터

- 1) 학생 지도 및 복지 관련 업무
- 2) 총학생회, 총여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 지도 지원 및 등록 관리
- 3) 여학생 관련 복지 지원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
- 4) 학생 상벌 및 청원 심의
- 5) 학생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6) 학생 관련 대내·외 협조 업무

- 7) 학생 진로, 학교 생활, 심리 등 관련 상담 및 상담간의 연계협력 업무
- 8) 교내외 장학 및 학자금 대출 업무
- 9) 교수/학생/직원/동문 제 증명 및 신분증 발급
- 10) 유실물 처리, 노트북 대여 업무
- 11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나. 심리상담센터

- 1) 심리·진로 관련 검사 실시 및 해석
- 2) 심리·진로 상담 및 연구
- 3)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집단상담·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) 대내·외 상담 관련 네트워크 구축
- 5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다. 장애학생지원센터

- 1) 장애학생의 학습·대학생활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2) 장애학생 상담 및 지원
- 3)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사업
- 4)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/보급/교육 사업
- 5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라. 미래인재센터

- 1) 학생 사회진출 관련 사업 총괄 기획
- 2) 오픈랩 운영 및 관리
- 3) 사회진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
- 4) 사회진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5) 커리어 포트폴리오 운영
- 6) 채용, 인턴십, 현장실습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 제공
- 7) 학생진로상담제 및 상담시스템 운영·관리
- 8) 사회진출 통계 분석 및 관리
- 9) 취업/진학 박람회, 채용 설명회, 캠퍼스 리쿠르팅 등 사회진출 관련 행사 유치·운영
- 10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마. 현장실습지원센터

- 1) 현장실습(국내외, 장단기, 기본·심화) 총괄
- 2) 현장실습 수요 매칭 및 사전교육, 현장지도 및 평가 등 기획 및 실행
- 3) 사회적 요구 기반 현장실습 기획 및 실행
- 4) LINC 3.0 사업단 관련 현장실습 사업 수행
- 5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2. 창업지원단

가. 창업교육센터

- 1) 학내 창업지원 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
- 2) 창업휴학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
- 3) 창업강좌 및 창업학점교류제 개설
- 4) 창업융복합 교과/비교과과정 개발
- 5) 창업경연대회 개최, 창업 동아리 선발 및 관리
- 6) 창업교육 관련 정부 및 대외기관 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실행

- 7) 창업교육 관련 실적 제고 및 통계 분석/관리
- 8) 예비창업 및 창업 관련 One-Stop 창업교육
- 9) 창업펀드,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보육센터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
- 10) LINC 3.0 사업단 관련 창업교육 사업 수행
- 11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나. 창업보육센터

- 1) 입주기업 선발(외부기업, 재학생 및 졸업생(3년 이내) 창업기업)
- 2) 입주기업 중간 및 졸업평가
- 3)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(컨설팅, 경영 및 기술지도, 창업자금 알선, 입주기업 투자 등)
 - 4) 졸업기업 주식 매도 관련 업무
 - 5) 창업보육 관련 정부 및 대외기관 재정지원사업 기획·실행
 - 6) LINC 3.0 사업단 관련 창업보육 사업(과제) 수행
 - 7) 재학생/졸업생(3년 이내) 창업기업 설립 및 입주예비 프로그램 개발 지원
 - 8) 기타 위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제29조(대학원) 대학원에 혁신기획팀, 교육지원팀(서울/국제)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혁신기획팀

- 가. 대학원 발전전략 수립
- 나. 교육, 연구, 장학제도 혁신 기획
- 다. BK21 대학원혁신사업 기획, 추진, 지원, 실적보고 및 성과 관리
- 라. BK21 대학원혁신사업비 집행 및 관리
- 마. 대학원 대외재정사업 지원
- 바. 소관 위원회 운영

2. 교육지원팀

- 가. 학적 및 졸업 업무
- 나. 대학원 소관 학과의 교무, 학사 업무
- 다. 대학원 등록 및 장학 업무
- 라. 학위논문 관련 업무
- 마. 소관 위원회 운영
- 바. 학생자치활동 지도
- 사.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 내규 제·개정
- 아. 학과별 교육과정 개편
- 자. 학위수여식(명예박사학위 수여 포함) 주관
- 차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30조(전문 및 특수대학원) 각 전문 및 특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며, 해당 대학의 종합행정실 또는 행정실에서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- 1. 입학, 휴학, 복학, 제적, 퇴학(자퇴), 재입학 및 졸업 업무
- 2. 등록, 수강 신청 및 강의시간표, 학사일정 작성 업무
- 3. 학생 출석 관리 및 수업 진행
- 4. 교육과정 편성, 보고, 운영 및 관리

- 5. 제 시험 진행
- 6. 실험·실습 진행
- 7. 학생 상벌 상신
- 8. 소속 대학원생 대상 대내·외 장학생 추천·선발 및 장학금 지급
- 9. 학생 취업상담·지도
- 10. 학생 성적 보존 관리
- 11. 학위논문 관련 업무
- 12. 교·강사 출강 관리
- 13. 학생자치활동 지도·감독
- 14. 비전임 교원 및 조교 임면
- 15. 특강, 교외수업, 교외실습, 자율선택과정 등 의뢰
- 16. 각 대학원 내규 제·개정
- 17. 학생지원비, 실험실습비 및 운영비 집행
- 18. 산·학·연·관 협동프로그램 개발
- 19. 우수학생 유치계획의 수립 진행
- 20. 각 대학원 학위수여식 주관
- 21.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·시행
- 22. 각 대학원 강의 및 급여시수 입력·조정 관리
- 23. 대학원 강의평가 실시
- 24. 대학원 요람 발간
- 25. 발전기금 및 동문 관련 업무
- 2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1조(각 대학) ① 각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며, 해당 대학의 종합행정실 또는 행정실에서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 다만, 제27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- 1. 소속 학생의 휴학, 복학, 재입학, 전과, 제적, 퇴학(자퇴) 및 졸업여부 결정
- 2. 수강 신청 지도
- 3. 학생 출석 관리 및 수업 진행
- 4. 교육과정 편성·보고·운영, 영어강의 지원 및 부전공 관리
- 5. 제 시험 진행
- 6. 실험·실습 진행
- 7. 학생 상벌 상신
- 8. 장학생 선발 및 추천
- 9. 학생 취업상담·지도
- 10. 학생 성적 보존 관리
- 11. 졸업논문 관련 업무
- 12. 대학 교수회의 운영
- 13. 학생자치활동 지도·감독
- 14. 비전임 교원 및 조교 임면
- 15. 특강, 과외수업, 교외실습 의뢰
- 16. 교·강사 출강 관리 및 결과보고
- 17. 학생지원비, 실험·실습비 및 운영비 등 자율예산 집행(물품 구입 포함)

- 18. 소속 교원의 출장, 해외여행 업무
- 19. 신입생 입학식 주관
- 20. 학위수여식 주관
- 21. 우수학생 선발 방안 연구 및 우수학생시상
- 22. 강의 및 급여시수 입력·조정 관리
- 23. 연계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- 24. 각 대학 건물, 공간, 시설 및 비품 관리
- 25. 대학 교육용비품도입위원회 운영
- 26. 대학 교육환경기준 작성
- 27. 일반대학원 교무 및 학사 관련 업무
- 28. 발전기금 및 동문 관련 업무
- 29. 교직 관련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 개설
- 30. 계절제수업(전공과목) 개설
- 3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②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교양교과목 및 교직과목 개설, 시간표 작성 및 수업 운영 관리
- 2. 계절제수업(교양과목) 개설
- 3.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시험 진행
- 4. 교양관련 강의시수 관리
- 5. 교양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운영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③ 한의과대학에 국제한의학교육원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각종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비학위과정의 개설
- 2. 국제한의학교육원 교육생 선발, 관리
- 3. 한의학 기초과학, 임상기술 및 교양분야의 국제 교육
- 4. 교육원 연수 과정 이수 증명관리
- 5. 국제한의학교육원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
- 6. 국제한의학교육원 교육교재 연구 및 출판
- 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2조(중앙도서관) 중앙도서관에 학술연구지원팀, 학술서비스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학술연구지원팀
 - 가. 정책 및 서비스 기획, 운영, 평가 및 각종 통계 관리
 - 나. 장서개발 정책 수립 및 관리
 - 다. 경희지식정보의 수집, 납본 및 DB구축
 - 라. 인쇄 및 전자자료의 선정, 구입, 기증 및 수증, 등록
 - 마. 자료의 분류, 목록 정리
 - 바. 학술정보교육 및 직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, 운영, 관리
 - 사. 전자도서관 및 학술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
 - 아. 연구지원 서비스, 학술DB 이용 관련 서비스
 - 자. 국내외 도서관계 협력 업무

- 차. 기금 운용 및 기부자 관리
- 카. 관련 제규정 및 위원회 관리
- 타. 도서관 시설과 비품 통합 관리
- 파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2. 학술서비스팀
 - 가. 자료 대출, 반납, 예약 등 열람 서비스
 - 나. 타 도서관 자료 이용 서비스
 - 다. 장서 및 서고관리
 - 라. 이용자 데이터의 통합 관리
 - 마. 이용자 서비스 및 정책 개발
 - 바. 교육, 연구, 학습 관련 정보자료 개발 및 지원 서비스
 - 사. 자료의 제적 및 폐기, 변상조치 관련 통합 관리
 - 아. 연체자, 연체자료, 연체료 관리
 - 자. 주제별 분관 운영 및 관리
 - 차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33조(경희기록관) 경희기록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대학 행정기록물 및 교원, 학생, 직원, 동문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 수집
- 2. 학교법인 경희학원 산하 기관들의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 수집
- 3. 수집 기록물의 분류, 정리, 기술, 평가, 보존
- 4. 기록물의 검색 및 열람 서비스
- 5. 교사(校史) 연구 및 편찬
- 6. 경희역사 관련 전시, 교육, 홍보 프로그램 운영
- 7.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
-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4조(국제교육원)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및 교사교육
- 2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Program, 교재 발간
- 3. 한국문화, 한국학 강좌 개설·운영
- 4. 학부의 외국어 수업 지원
- 5. 외국어강좌 개설·운영
- 6. 국제교육 관련 강좌 개설·운영
- 7. 해외 한국어 및 언어 교육기관과의 교류·협력
- 8. 외국유학생(어학연수생) 유치
- 9. 대학원에서 위탁하는 강좌 개설
- 10. 어학실습실 운영 관리
- 11. 한국어교육 관련 정부사업 참여
- 12. 원생의 학적 및 증명관리
- 13. 국제처와 연계한 외국인 학생 관리
- 14. 한국어강사 인사관리(임용, 급여 등 포함)
- 1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5조(신문방송국) 신문방송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대학주보 발행 및 배부
- 2. 영자신문의 발행 및 배부
- 3.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출
- 4. 전자신문, 웹진, 인터넷 방송 실시
- 5. 대학주보, 영자신문, 교내방송의 제작 기획
- 6. 각종 문화행사 실시(문화상수여, 고교문예경시대회, 경희사진공모전, 전국 대학생 영문수필, 독후감경시대회 등)
- 7. 위성방송 유지관리
- 8. 교내 행사지원
- 9. 각종 관장 업무 관련 캠페인 전개
- 10. 방송 기자재 관리
- 11. 편집자문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
- 12.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에 대한 선발과 지도 감독
- 1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6조(글로벌미래교육원) 글로벌미래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학위연계 자격 취득, 비학위과정의 개설
- 2.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생선발 관리
- 3. 각종 직업교육 연구개발 및 개설
- 4. 각종 연수 및 위탁교육
- 5. 원생의 학적 및 증명관리
- 6. 학점은행제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7. 글로벌미래교육원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
- 8. 글로벌미래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 관리
- 9. 글로벌미래교육원 자체 강사 및 비전임교원 인사(임용, 정원, 급여 등 포함) 및 관리
- 10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7조(평생교육원)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각종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2. 학점은행제 과정의 개설 및 운영
- 3. 비학위과정의 개설 및 운영
- 4. 지자체 및 관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5. 교내외 연수 및 위탁 프로그램 운영
- 6. 평생교육원 교무 및 학사업무
- 7. 평생교육원 학생유치 및 홍보업무
- 8. 평생교육원 시설 및 비품 관리
- 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8조(언어교육원) 언어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
- 2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기획
- 3.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4. 지자체 및 관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5. 교내외 언어/문화 연수 및 위탁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6. 언어교육원 교무 및 학사업무
- 7. 언어교육원 학생유치 및 홍보 업무
- 8. 언어교육원 시설 및 비품 관리
- 9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9조(중앙박물관) 중앙박물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유적의 발굴, 조사 및 답사
- 2. 박물관 자료의 수집, 보존, 관리 및 전시
- 3. 박물관 자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
- 4. 유적조사보고서, 박물관보, 소장품목록 및 기타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
- 5. 공개강좌, 강연회, 전시회 등 학술 관계 각종 행사 개최
- 6. 소장유물 출품 등 관련 기관·단체와의 교류
- 7. 박물관 유물등록 및 전산화 추진
- 8. 이영림 기념관 기증유물 보존·관리 및 전시, 기념관 운영 관련 업무
- 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0조(자연사박물관) 자연사박물관에 학예연구실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전시연구: 표본수집, 관리, 연구, 전시 및 시설관리, 대외교류
- 2. 교육: 제반 박물관 교육 및 홍보물 제작
- 3. 행정: 박물관 행정 및 서무 업무
- 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1조(출판문화원) 출판문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대외 출판·디자인 수익사업
- 2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2조(건강센터) 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 진료
- 2. 학생의료공제회 회원의 1차 진료 담당 및 진료의뢰서 발급
- 3. 급·만성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예방의학적 지도
- 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3조(생활관) 기숙사 관장업무를 통할하기 위해 생활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사생 선발
- 2. 입사생 지도 관리
- 3. 기숙사 시설 관리, 유지
- 4. 기숙사의 식당운영
- 5. 사생 입·퇴사에 관한 사항

- 6. 국제교류 관련 외국인 입·퇴사 관리
- 7. 모국순방여름학교 학생 입·퇴사 관리
- 8. 입학시험시 지방학생의 입·퇴사 관리
- 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4조(체육부, 체육시설운영단) ① 체육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
- 2. 선수의 훈련 실시 및 감독
- 3. 각 운동부 제반 업무 관장
- 4. 선수의 발굴에 관한 사항을 체육위원회에 보고
- 5. 각 운동부 경기 출전 및 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② 체육시설운영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체육 교육 및 수업 지원
- 2.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3. 체육시설 운영
- 4. 선승관 및 실외 체육시설 관리
- 5. 체육시설 등 대관 및 장소 이용 관련 업무 총괄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5조(공학교육혁신센터)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공학교육인증제의 정착과 활성화
- 2. 공학교육인증평가 지원
- 3.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추진
- 4. 수요자(산업체) 중심의 공학교육의 교과과정 연구 및 개선
- 5. 창의적 공학교육의 활성화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6조(천문대) 천문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전시장 및 보유기기 유지, 관람객 안내
- 2. 천체 관측
- 3. 강연회, 학술회의 등 각종 학술행사 개최
- 4. 천문 Data Center 운영
- 5. 공개관측행사 개최
- 6. 기자재 실험 및 연구
- 7. 유료 천문 교육프로그램 진행
-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7조(예비군연대본부) 예비군연대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비상 계획 업무
- 2. 민방위 관계 업무
- 3. 예비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

- 4.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
- 5. 휴학·제적·자퇴·미등록자 파악하여 전출
- 6. 예비군 지휘자 임면
- 7. 비상계획업무, 비밀문서 및 비치인가자 관리
- 8. 방위지원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
- 9. 병무관련 업무홍보 및 민원상담 (서울캠퍼스)
- 10. 병무청에 학부 학적 변동자 통보 (서울캠퍼스)
- 11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8조(교수학습개발원) 교수학습개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교수법 관련 연구, 개발 및 지원
- 2. 학습법 관련 연구, 개발 및 지원
- 3.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컨텐츠 개발 및 지원
- 4. 온라인 강의 운영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지원
- 5. 교육매체 제작 지원 및 관련 기자재 관리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9조(혜정박물관) 혜정박물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기증유물의 보존·관리 및 전시
- 2. 유적의 발굴조사 및 유물의 수집
- 3.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
- 4. 공개강좌·강연회·전시회 등 각종 교육 및 학술 행사 개최
- 5. 조사보고서·박물관보·소장품목록 등 간행물의 발간
- 6.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
- 7. 박물관 유물 및 소장품 등록
-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0조(인권센터)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
- 2.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3. 성희롱 첫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
- 4. 인권 및 성(性) 관련 상담 및 연구
- 5. 인권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
- 6.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- 7. 인권위원회 운영 및 지원
- 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1조(미래문명원) 미래문명원에 글로벌사업팀과 글로벌봉사팀을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글로벌사업팀
 - 가. 경희학원 창학정신 계승 및 평화사업 추진
 - 나. 학술공동체 형성 및 운영

- 다. UN 산하기구, 국제기구, INGO 및 NGO와의 교류협력
- 라. 국제(학술)회의 기획 및 개최
- 마. 세계평화의 날 기념(Peace BAR Festival 등) 기획 및 운영
- 바. 미원렉처, 석학초청특강 등 거교적 특강 기획 및 개최
- 사. 네오르네상스장학 운영
- 아. UN 국제기구 Internship Program 운영 및 관련기관 교류 협력
- 자. UNESCO Chair 기획 및 운영
- 차.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
- 카. 연구 총서 기획 및 발간
- 타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글로벌봉사팀

- 가. 지구사회봉사단 운영 및 관리
- 나. 대학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- 다. 사회봉사 참여자들의 활동, 교류협력 및 교육 지원
- 라. 국제기구·대학·NGO·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Global Service Network 구축
- 마.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
- 바. 사회봉사 등 교과목 개설 및 운영
- 사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제52조(부설 연구소(원)) 캠퍼스별로 부설연구소(원)를 두며, 이에 대한 사항은 「부설연구소(원) 설립 및 운영에 관한규정」에 따른다.

제53조(산학협력단) ① 본교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로 서울 사무소와 의무사무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실, 연구지원실, 감사팀, 중앙기기센터, 공동기기원, 중앙실험동물센터를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산학기획실

가. R&D기획팀

- 1) 신규·중대형 국책연구사업 수주 및 산학·연구 강화 기획
- 2) 학술연구 진흥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
- 3) 국제협력 및 대외기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- 4) 연계협력클러스터 기획 및 운영 지원
- 5) 산학기획 관련 위원회 운영
- 6) 기타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나. 기술혁신팀

- 1) 기술지주회사 운영관리 및 신규 자회사 발굴
- 2) 산학진흥사업 운영
- 3) 기술이전,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
- 4)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- 5) 벤처창업 지원 및 자문
- 6) 학교기업 운영관리 및 신규 학교기업 발굴
- 7) 대학 성과 확산을 위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

- 8) 특허심의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
- 9) 산학협력가족회사 운영관리 및 추가 발굴
- 10) 교수, 학생 창업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업 및 지원
- 11) 기타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2. 연구지원실

가. 연구지원팀

- 1) 학문계열별 연구과제 운영
- 2) 대외연구비(과제) 관리(사전검토, 진행 및 관리 등) 및 외부감사 지원
- 3) 정부 및 기업 후원 프로그램 관리
- 4) 간접비 징수
- 5) 기타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나. 경영지원팀

- 1) 산학협력단 조직 및 인사 관리
- 2) 산학협력단 법인사무 및 경영지원(관리, 관재, 구매, 총무) 업무
- 3) 산학협력단 예/결산 및 간접비/법인세 관리
- 4) 산학협력단 수입/지출/세무
- 5) 산학협력단 전산 관리
- 6)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
- 7)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운영
- 8) 기타 각 단에 부수되는 사항

3. 감사팀

- 가. 감사제도 기획
- 나. 산학협력단 정기/일상/특별감사 계획 수립/실시/보고
- 다.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 계도
- 라. 대외기관 연구비 감사 및 현장점검 대응
- 마. 산학협력단 제규정 관리
- 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4. 중앙기기센터(서울캠퍼스)
 - 가. 공동 실험·실습 기자재 도입, 설치·운영
 - 나. 보유 기자재의 활용지도
 - 다. 과학 기술 정보 수집 활동
 - 라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5. 공동기기원(국제캠퍼스)
 - 가. 고가 연구용 기자재 도입, 심의, 관련 업무 지원
 - 나. 고가 연구용 기자재 관리 및 운용
 - 다. 연구용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분석 서비스 제공
 - 라. 고가 연구용 장비 관련 교육 지원
 - 마. 고가 연구용 기자재를 이용한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 지원
 - 바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6. 중앙실험동물센터
 - 가. 동물실험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지원
 - 나.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

- 다. 시설 및 장비 관리
- 라. 센터 사용료 청구 및 예산 집행
- 마. 실험동물의 관리(공급, 사육, 검역, 감염예방, 순화, 사체관리 등)
- 바.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
- 사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- ③ 산학협력단에 분사무소로서 의무산학협력단을 두며 의학계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1. R&D기획팀

- 가. 의학계열 신규·중대형 국책연구사업 수주 및 산학·연구 강화 기획
- 나. 의학계열 연구자 맞춤형 정부R&D 대응 및 지원 시스템 구축
- 다. 의학계열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개발
- 라. 의학계열 산학연구, 산학협력, 산학교육 관련 진흥정책 수립
- 마. 의학계열 산학협력 관련 대외기관과의 교류
- 바.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사. 기타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2. 기술혁신팀

- 가. 의학계열 지식재산 출원, 등록, 유지 및 관리 업무
- 나. 의학계열 지식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
- 다. 의학계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계획수립 및 시행
- 라. 의학계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기획, 외부사업 수주 및 과제 관리
- 마. 의학계열 산하기관 보유기술 분석, 가치 및 시장성 평가
- 바. 의학계열 산업자문 계약체결 및 관리 운영
- 사. 의학계열 산학협력 수요조사 및 활동 정보 수집, 제공 및 홍보
- 아. 의학계열 벤처 창업 지원 및 자문
- 자. 소관분야 통계 업무
- 차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3. 경영지원팀

- 가. 의무산학협력단 행정관리
- 나. 의무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및 인사 관리
- 다. 의무산학협력단 예/결산 및 간접비/법인세 관리
- 라. 의무산학협력단 수입/지출/세무
- 마. 의무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
- 바. 의무산학협력단 제 규정 관리
- 사. 의무산학협력단 홍보 관련 기획 및 관리
- 아. 소관분야 통계 업무
- 자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4. 연구지원팀

- 가. 의학계열 연구과제 운영
- 나. 의학계열 대외연구비(과제) 관리(사전검토, 진행 및 관리 등) 및 외부감사 지원
- 다. 정부 및 기업 후원 프로그램 관리
- 라. 의학계열 간접비 징수
- 마.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

④ 중앙기기센터, 공동기기원, 중앙실험동물센터는 교비 회계로 운영한다.

제54조(학교기업) 각 학교기업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해당 학교기업 분야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의 현장실습 수탁교육
- 2. 해당 학교기업 분야 관련 연구 개발 사업
- 3. 해당 학교기업 분야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및 판매
- 4. 해당 학교기업 분야 관련 학과의 장학사업
- 5. 위 각 호와 관련되는 전자상거래,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5조(원자로센터) 원자로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원자로(AGN-201K)의 운영 및 안전관리
- 2. 원자로 관련 교내·외 대학생 교육 및 산업체 위탁 교육
- 3. 교내 방사선 종합관리
- 4. 원자로 이용 연구과제 수탁 및 수행
- 5. 일반인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홍보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6조(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)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시신의 수급, 방부처리 및 관리 등 해부학 실습 지원
- 2. 시신기증 홍보 및 상담
- 3. 유가족 및 납골당 관리
- 4. 시신화장 기획 및 진행
- 5. 의학계열 기초 및 임상실습 지원
- 6. 임상실습 관련 업무
- 7. 국가고시(실기시험) 대비 지원
- 8. 인체모형 등 기자재/소모품 관리
- 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7조(학생군사교육단)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
- 2. 후보생 선발업무
- 3.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
- 4.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
- 5. 기타 후보생 관련 업무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8조(경희의과학연구원) 경희의과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지원 및 기능적 통합 관리
- 2. 임상교원 연구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
- 3. 신약, 신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- 4.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

- 5. 동서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9조(한국어센터) 한국어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1.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2.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과정 지원
- 3. 대학원 위탁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- 4. 한국어센터 교무 및 학사업무
- 5. 한국어센터 학생유치 및 홍보 업무
- 6. 한국어센터 내 시설 유지관리
- 7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0조(보칙) ①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 ②「단과대학자율운영지원을위한규정」에 의거한 담당의 업무분장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79년 1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82년 8월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5년 9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
부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업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) 제18조 제1호의 '교원 해외연구파견 및 해외학술활동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'는 2010학년도까지 국제교류처(국제교류과)에서, 2011학년도부터 연구산학협력처(연구지원과)에서 관장

한다.

③(시행시기에 따른 경과조치) 제27조 제1항 제27호의 '일반대학원 교무 및 학사 관련 업무'의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8조, 제17조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	부칙
본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	, ,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8조 내지 제10조, 제24조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.

본 규정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2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본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

본 규정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	
본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	
본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	
본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	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	부칙 행한다.	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(입학처) 제1호 입학전형팀의 일반대학원 내국인 입학 관련 업무는 2023.03.01.부로 일반대학원에서 입학전형팀으로 이관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.		
본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	
본 규정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	

부칙